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숙박업 매개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성인 확인 의무〉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15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숙박업 매개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성인 확인 의무(안 제42조의 4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14.

다.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물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숙박업 매개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성인 확인 의무(안 제42조의4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¹⁾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42조의4 신설).
- 안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3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4(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한다)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영업소를 말함.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제42조의4를 위반하여 <u>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
4. ~ 25. (생략)	4.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2)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최근 숙박업소 이용을 매개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정보통신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인증 없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혼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소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숙박업자들이 청소년의 기망행위로 인한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청소년의 정당한 숙박업소 이용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되나 숙박업소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³⁾, 다만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 뿐임.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제54조(과징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기망행위로 혼숙 등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청소년의 숙박에 대한 숙박업자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임⁴⁾⁵⁾.

-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발표한 ‘숙박업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미성년자 혼숙 예약 (49.6%)’이 호소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업자들이 이용 매개 서비스를 통해 예약자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알게 되는 경우, 숙박 제공을 거절하는 등 청소년의 정당한 숙박업소 이용까지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둘째,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이미 숙박업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중복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3항⁶⁾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이용자의 성인 여부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4)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은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등,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행위, ③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해당 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제21대 국회에서 숙박업자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25445호, 정운천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6)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 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예약단계에서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타인 또는 동행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고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실제로는 혼숙 등을 행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실제로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지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숙박업자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성인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숙박업소 대면 확인 출입과의 규제 수준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혼숙하는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예방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상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단독 숙박 및 동성 간 숙박에 대해서는 제한할 근거가 미비하며, 청소년의 혼숙 등 풍기문란 행위의 제한은 예약 단계가 아닌 출입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숙박업소의 이용을 매개’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숙박 예약 서비스에 진입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②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자가 투숙 시점에 투숙객의 연령 및 혼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 ③ 국내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동일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① 성인인증을 통해 실제로 이용권을 구매한 구매자와 실질적인 이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어 숙박업소에서 직접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이고,
- ② 「청소년 보호법」상 혼숙을 제외한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소 이용권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